

의안번호	제2822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향숙 의원 등 4인
발의연월일	2024. 8. 23.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향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3.

발 의 자 : 김향숙, 김석한, 허옥희,
최두임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청년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UN이 재정립한 평생연령 기준을 반영 및 참고하여 고성군 청년의 연령대를 현행 18세 이상 45세에서 18세 이상 49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분야에서 소외되는 청년층을 줄이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계적인 청년층의 연령대를 상향하여 40대 젊은 층의 유출 방지 및 유입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청년의 정의 중 연령대를 확대함(안 제2조제1호)

- 18세 이상 45세 이하(현행) → 18세 이상 49세 이하(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39호

- 예고기간: 2024. 8. 23.(금) ~ 2024. 8. 28.(수)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45세”를 “49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18세 이상 <u>45세</u>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.</p> <p>2. ~ 5. (생 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<u>49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